

# 시·청각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

누구나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손 안의 디지털 세상 만들기

일시 2015. 9. 1.(화) 15:00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공동주최 국가인권위, 시각장애인연합회, 민병주 국회의원실

후원 전자신문사



## 토론회 순서

시 간	내 용
15:00~15:20 (20분)	미니 북콘(book concert) [시각장애대학생 당사자]
15:20~15:25	자리 정돈
15:25~15:45 (20분)	축사 및 인사말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민병주 의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15:45~17:20 (95분)	<p><b>1.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방안</b>  <b>발 제 :</b> 김재왕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  <b>토 론 :</b> 김봉섭 팀장(한국정보화진흥원)  안동한 팀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성일 교수(성균관대)</p> <p><b>2. 장애인 방송접근권 문제와 해소방안</b>  <b>발 제 :</b> 강완식 실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b>토 론 :</b> 이재찬 부장(CJ헬로비전)  임승택 ICT미디어분과위원장(한국농아인협회)  김정호 이사(엑스비전테크놀로지)</p> <p><b>좌 장 :</b> 이석준 과장(국가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p> <p>* 발제자(2명) 각 20분 이내 발표, 토론자(6명) 각 10분 이내 토론</p>
17:20~17:50 (30분)	참석자 종합토론(15분 내외) 방청석 질의·답변(15분 내외)
17:50~18:00	폐회



# 목 차

## 제주제 –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방안

시·청각장애인 모바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정 방안 ..... 5

김재왕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시청각장애인 모바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정 방향 ..... 14

김봉섭 팀장(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역량개발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하여 ..... 19

안동한 팀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정보통신 및 모바일 접근성에서의 장애인의 참여가 갖는 의미 ..... 23

이성일 교수(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 제2주제 - 장애인 방송접근권 문제와 해소방안

장애인 방송접근권 문제와 해소방안 - 파워포인트 발표자료 한글요약문 - .....	29
강완식 정책실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인방송 정보접근권 개선사례 - CJ헬로비전 ‘이어드림’ - .....	61
이재찬 부장(CJ헬로비전)	
청각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권을 위하여 .....	63
임승택 분과위원장(한국농아인협회 ICT미디어분과위원회)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 - 플랫폼 접근권 확보가 필요 .....	65
김정호 이사(주)엑스비전테크놀로지)	
부록 : 참고 법령 .....	6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6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국가정보화 기본법 .....	91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108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	1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	232

제 1 주제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방안





# 시·청각장애인 모바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정 방안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

## 1. 들어가며

국민 열 명 중 아홉 명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이다. 정보 습득, 물건 구매, 사회관계망 서비스, 송금 등 생활의 모든 영역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다. 냉장고, 에어컨 등의 기기가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도 곧 구현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장애인들도 잘 적응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은 듯하다.

이 글에서는 모바일 접근권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법령 등을 살펴 보고 시·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모바일 접근권의 문제를 보려고 한다. 그리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이 글은 부족한 점이 많다. 좋은 토론을 통해 부족한 점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 2. 모바일 접근권과 관련한 법령

###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모바일 접근권을 직접 규정한 내용은 없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시기가 모바일 기기가 개발되고 활성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모바일 접근권에 적용 가능한 규정으로 제15조와 제23조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모바일 기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한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규정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가 포괄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정보통신 관련 사업자의 구체적인 의무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3조 제1항은 정보통신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의 접근권 보장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에게 노력의무만 부과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밖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은 국가기관 등에 대한 정보통신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구체화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는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규정하고 있다. 다양한 행위자에 대하여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에 대한 편의제공의무를 규정한 모법의 취지가 시행령에서 그 수단을 웹사이트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바람에 퇴색하였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① 제3조제4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 나. 국가정보화기본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구가기관 등의 웹사이트 접근권 보장 의무(제1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접근성 보장 노력 의무(제2항),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의 접근성 보장 노력 의무(제3항), 등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5항), 이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다.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밖에 국가정보화기본법은 웹접근성 품질인증 등을 규정하고 있고(제32조의2에서 제32조의5까지),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을 규정하고 있다(제33조)

### 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이하 ‘모바일 접근성 지침’)은 모바일 접근권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지침이다. 모바일 접근성 지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운영, 개선 및 유지보수할 경우에 적용되고(제3조 제1항), 운영체제를 갖는 모바일 전화기, 운영체제를 갖는 태블릿 기기, 운영체제를 갖는 전자책 기기 등에 적용된다(제3조 제2항).

국가기관 등의 장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신규 구축하는 경우에 무리한 부담이 없는 한 모든 운영체제와 모바일 기기에서의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하고(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참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하는 경우 무리한 부담이 없는 한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 참조). 다만, 무리한 부담이 없는 운영체제와 모바일

기기의 종류를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할 수 있어서(제4조 제3항, 제5조 제3항 참조),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모바일 접근성 지침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무리한 부담이 없는 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준수사항)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무리한 부담이 없는 한 준수할 것을 권장하는 사항(권고사항)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준수사항은 대체 텍스트, 초점 운영체제 접근성 기능 지원, 누르기 동작 지원, 색에 무관한 인식, 명도 대비, 자막·수화 등의 제공 등이다.

## 라.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이하 ‘장애인 정보 접근 지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 제조업자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및 정보통신제품의 구매, 설계, 제작, 가공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장하고 있다(제1조 참조). 위 지침은 유·무선통신서비스, 네트워크서비스, 콘텐츠 제공서비스 등 정보통신서비스와 유·무선 통신기기, 컴퓨터 본체 및 주변기기 등 정보통신제품,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용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를 적용범위로 하고 있다(제3조 참조).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의 기능에 대한 설계 지침과 웹사이트의 접근성 준수에 관한 설계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제2장, 제3장 참조).

## 3. 문제점

### 가. 실효성의 부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3조 제2항,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 제2항과 제3항과 같이 정보접근과 관련하여 그나마 존재하는 규정도 관련 주체에게 노력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어 실효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들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의 정당화

사유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인정하고 있고, 모바일 접근성 지침이나 장애인 정보 접근 지침에서 무리한 부담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노력의무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 하여도 관련 업계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의 규정은 관련자의 규모나 능력을 고려 하지 않고 노력의무만을 부과하여 모바일 접근권 보장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 나. 구체적 규정의 부재

관계 법령에서 모바일 접근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모바일 접근성 지침이 있지만 규정 형식이 고시에 불과하고, 적용대상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라는 한계가 있다. 모바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웹접근성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비교적 자세히 규정되어 있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다. 모바일 접근권도 웹접근성과 유사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 다. 적용범위의 제한

적용범위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한정된 문제가 있다. 웹접근성을 규정한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 제1항 또한 국가기관 등의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민간기관에 대한 언급은 없는 실정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대부분이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만큼 민간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4. 모바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정 방안

## 가. 노력의무조항의 개정

노력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3조 제2항,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 제2항과 제3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들 조항이 의무조항으로 개정되더라도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무리한 부담 등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 관련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정보통신 관련자들의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생략)

②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생략)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나. 구체적 규정 신설·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바일 접근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모바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21조 제1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미비했던 소프트웨어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소프트웨어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인증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① 제3조제4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소프트웨어·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②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소프트웨어(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한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이하 생략)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모바일 기기 등 새롭게 개발되는 기기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의2 (재화 접근에서의 차별금지)

- ① 재화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해당 재화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안내, 확대, 조작 단추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재화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에 대한 정보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 점자·음성·수화변환용코드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과 교육에 있어서 정보접근에 대한 내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정보접근성이 보장된 전산업무시스템

제14조 제1항 제5의2호 신설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 5. (생략)

5의2. 정보접근성이 보장된 원격교육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5. 결론

지금까지 모바일 접근권과 관련한 현행 법령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지금 우리나라는 모바일 접근권에 대해서 규정한 법령이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이다. 시대 변화에 맞추어 이에 대한 법령이 마련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부족하지만 이 글이 개정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시청각장애인 모바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정 방향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역량개발팀

김봉섭 팀장

## 1. 모바일 앱 접근성 현황

### □ 관련 통계 및 정책현황

정보통신 이용 환경이 PC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국가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경쟁적으로 모바일 앱을 개발·운영

구 분 (2013년 12월)	합계 (개)	행정기관			공공기관
		소 계	중 앙	지자체	
공공부문 모바일 앱(APP)	1,167	817	297	520	350

※ 모바일 앱 전체 등록현황(15년 1월) : (구글플레이) 약 1백만개, (애플스토어) 약 90만개

반면, 모바일 앱 접근성이 웹 접근성에 비해 저조한 상황으로, 장애에 관계없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필요

‘14년 정보격차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51.3%로, 일반 국민에 비해 27.5%p 낮은 이유는 모바일 앱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

※ 소외계층 스마트폰 보유율(%)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국민		15.6	39.6	61.5	74.3	78.3
소 외 계 층	장애인	1.6	8.6	23.1	39.9	51.3
	장노년층	1.0	6.2	18.8	41.5	51.4
	저소득층	1.9	17.0	31.8	55.1	61.6
	농어민	1.0	7.3	19.2	35.7	44.8
	평균	1.3	8.6	21.7	42.8	52.2

\* 평균은 소외계층별 인구 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 기준임

※ 웹 접근성 대비 모바일 앱 접근성 준수 현황('14년 정보격차실태조사)

구 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법인
웹 접근성	95.1점	90.6점	80.2점
모바일 앱 접근성	81.2점	76.5점	76.7점

이에 따라 우리 원은 '10년부터 모바일 앱 접근성 표준 제정, 점검 매뉴얼 배포, 실태조사 등 모바일 앱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2014~2015년에는 모바일 앱 접근성 진단 및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 모바일 앱 접근성 향상 정책추진 현황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정보통신단체표준 제정(‘10. 12월)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OS별 접근성 점검 매뉴얼 배포
  - ※ 안드로이드(2011. 10. 31), IOS(2012. 8. 9)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미래부 고시 제정(‘13. 8월)
- 모바일 앱 접근성 진단 및 컨설팅 시범사업(30개 앱) 추진(‘13. 12월)
- ‘2014 웹 접근성 향상 전략 세미나’ 개최(‘14. 6. 3, 대한상공회의소, 참석자: 500명)
  - ‘모바일 접근성 평가방법’ 및 사례 발표
- 모바일 앱 접근성 진단·컨설팅(150건) 및 품질심사(100건) 시범사업 추진(‘14. 9월~12월)
- 모바일 앱 접근성 전문교육을 통해 인력양성(50명)(‘15.2~6월)
- 장애인 단체 대상 스마트폰 접근성 기능 설명회(‘15.7.22)

향후에는 모바일 앱 접근성 외 스마트폰 플랫폼 접근성 기능향상 등 모바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다 다양한 활동 추진 예정

#### □ 관련 법률

앱 접근성 관련 법률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 의거, **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하지만, 동법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1항은 **웹사이트만을 특정**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07호)’의 제4조, 제5조에 의해, 국가기관 등의 장은 무리한 부담이 없는 한 장애인 모바일 앱 접근성이 보장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

## 2. 모바일 접근성 법·제도 시사점 및 발전방향

###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자정보 범위 구체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에서 전자정보를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자정보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나 시행령은 웹 사이트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의무화된 전자정보의 범위는 웹 사이트에 한정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상에 발제하신 내용과 같이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하여 보다 접근성 준수 전자정보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웹사이트 외 소프트웨어, 모바일 앱 등 전자정보에 대한 접근성 범위를 구체화하고 실효성 있게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범위에 대한 접근성 준수여부 평가방법, 준수방법을 알려주는 표준, 제작기법 등이 선행

### □ 권장 규정에서 공공·민간부분의 책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3조 제2항,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은 의무조항으로 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동의

다만, 국가정보화기본법은 국가정보화라는 공적 영역을 규정한 법규로 민간영역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의 접근성 보장은 기본법 보다는 특별법에서 의무화하는 것이 더 적절

예를 들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산업법’에서 접근성 의무화 관련 규정 신설 가능

또한, 의무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먼저 방송접근성 의무화한 사례 참고 가능

- ① 단계적 준수를 위해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와 같은 연차 목표치를 정하고,
- ② 접근성 의무화에 따른 산업계와 장애인단체 등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구성하는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같은 위원회 설치(민간참여 위원회는 미국의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률에서도 도입)
- ③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통신사업자 등 공적 사업자의 경우는 ‘실적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의 경우 공시를 권장

## □ 새로운 모바일 시대에 맞는 법적 환경 마련 준비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정보화기본법은 기본적으로 모바일 시대 이전에 제정된 법률로 한계점을 내포

중장기적으로는 모바일 시대 더 나아가서는 초연결사회 및 고령화사회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정보통신 접근성 준수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법체계 마련 연구 필요

산업계와 장애인계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미국의 ‘21세기 비디오 및 통신법’은 이런 점에서 많은 시사점 제시

#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하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안동한 팀장

## 1. 정보접근성 대상 재고 필요

‘접근성’이란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교통·시설·제품·서비스·디자인·권리·정보통신 등의 환경을 가능한 한 많은 사용자(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출처:네이버지식백과)”, “사용자의 신체적 특성이나, 지역, 성별, 나이, 지식 수준, 기술, 체험과 같은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사용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고 이를 평가 할 때 쓰이는 말(출처:위키백과)”로 정의하고 있다.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모든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고 가능한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이러한 정보접근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용자가 장애인 뿐 아니라 고령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흔히들 얘기하는 “어르신 폰”, “실버 폰”의 등장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접근성이 필요한 이용자들이 모바일 기기 뿐 아니라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급변하는 정보화의 시대에서 소외계층으로 전락되어 사회참여 뿐 아니라 일상생활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면 대부분 사용자의 이용이 용이한 것이지 접근성이 필요한 대상이 장애인에 국한된 것이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를 장애인만의 문제로 제한하는 것보다 장애인, 고령자 등으로 확대하여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을 교통약자로 표현하여 홍보하거나 일반 도서에 대하여 독서가 불가능한 한 경우를 독서 장애로, 학습을 수행할 수 없어 학습능력의 저하를 보이는 경우를 학습 장애로 표현하는 것과 같은 개념을 적용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통신 이용이 불편한 사람을 ‘정보접근약자(가칭)’로 그 대상을 규정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접근성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관련 표준 추세로 보면 장애인이라는 독자적인 표현을 사용하기 보다는 장애인·고령자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외국의 경우도 관련 ISO 국가표준 등에서 표준의 서문이나 목적 등에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고령화로 인해 노안, 난청, 인지장애가 온다. 그 정도가 심해지고 지속적이면 장애로 판정될 수 있다. 우리 세대에서 이러한 정보격차의 개선 노력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향후 우리 스스로가 정보소외계층으로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는 날이 올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접근성의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 2. 미국의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이 주는 시사점

현재 우리는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제 그 정보를 인지하는 수단이 언제나 휴대가 가능한 형태로 바뀌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5년 5월 현재 약 4167만명이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공공업무, SNS, बैं킹, 쇼핑, 예매 등 모바일 정보화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차법)”로 인해 공공기관은 2008년부터 민간기업은 2013년 이후 웹 접근성 준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유니버설디자인”, “웹 표준화”, “브라우저 호환성”과 병행해 “웹 접근성” 개선사업이 이슈화되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PC를 통한 장애인 및 고령자의 웹 사이트 이용 환경이 개선되어 정보격차가 조금 줄어들었나 싶었는데 이제는 PC보다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추세이고 기업들의 주요 서비스도 모바일 환경에 맞춰 제공되고 있다. 다시 정보격차가 커진 것이다.

이러한 정보화의 물결에 따라 미국은 기존 ‘미국장애인법, 재활법’에서 정보접근약자를 위한 강력한 법적 제도가 있음에도 자국의 장애인 및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법(이하 21세기법)”을 만들었다. 21세기법은 2010년 10월 미국 정부에서 제정한 법으로 장애인 등이 통신환경이나 비디오 환경에 접근하고 이용함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며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모든 전자정보를 비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것과 같이 차별없이 장애인에게 동등하게 제공하도록 ‘인터넷 서비스, 통신중계 서비스, 스마트폰 접근성 준수, 화면해설 및 자막 제공’ 등의 준수를 직접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접근성 준수 이행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연방정부에 의해 개발, 조달, 유지, 보수, 사용되는 모든 전자정보의 접근성 준수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21세기법에서 참고해 보아야 할 것은 서비스 제공자와 운영자 뿐 아니라 제조사와 개발자 등도 접근성을 지켜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전세계 모든 기업들은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자국 기업을 보호할 목적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자국의 정보접근약자를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간혹 신문에서 TV, 냉장고 등 국내 전자사의 제품들이 접근성을 준수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는데 사실은 21세기법을 통과하여 미국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것이다. 21세기법이 없었다면 과연 이러한 노력이 있었을까 의심스럽다.

국내에 어떻게? “장차법”, “국가정보화기본법”과 각 시행령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대상을 “생산 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라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특히 그 대상을 웹 사이트만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스마트폰에 제공되는 서비스 뿐 아니라 각종 소프트웨어, 영상물 등 명백히 전자정보에 포함되어야 할 접근성 준수 대상들에 대한 의무 준수 여부를 해석하는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주목해야할 내용은 21세기법에서는 장애인 등이 재난망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재난망 운영과 관련하여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강력히 규정하고 있다. 수해, 태풍 등 자연재해나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히 대피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최근 메르스와 같이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관련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시각, 청각 등 장애인들은 대처방안이나 피해상황 등 관련 정보를 비장애인에 비해 차별 없이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차별 없이 제공받는 것은 기본이고 각종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현실적으로 마련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웹 사이트만 명시하고 그마저 직접적인 강제 사항이 없고 위반 시 처벌 또한 쉽지 않은 국내법에 비교하면 장애인이 느끼는 삶의 질은 그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 사회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형식적인 법보다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요구도 필요하겠지만 법과 제도를 만들 때 그 취지나 목적이 명백히 지켜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 정보통신 및 모바일 접근성에서의 장애인의 참여가 갖는 의미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이성일 교수

모바일 접근성은 사회적 약자들도 가능한 한 동등하게 정보화 사회가 제공하는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기본 조건이다. 특히 급속히 전개되는 고령사회에서 고령자와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되고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가 존재하려면 이들 모두가 동등하게 정보를 활용하고,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향후에도 모든 중요한 서비스는 스마트 모바일 기술에 의해서 꾸준히 제공될 것이므로 모바일 접근성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과 관계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이 공공성을 띠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자 및 운영자들이 접근성을 고려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최소의 설계고려사항이다. 당연히 모바일이 삶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시대에서는 그 적용범위가 공공기관 이상으로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바일을 통한 정보 획득과 의사소통은 교육과 고용 이상으로 중요한 삶의 일부이기에 더 많은 부분에 적극적으로 보장의 노력이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 아쉽게도 이러한 의무는 정보 제공자의 자발적인 노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과 제도에 의해서 강제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모바일 접근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모바일 기기라는 제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각종 서비스와 콘텐츠가 접근 가능해져야 한다. 따라서 모바일 기기 자체가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접근 가능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콘텐츠가 접근 가능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접근성이 결여되면 모바일 접근성은 확보되기 힘들다. 우리는 이미 애플의 아이폰과 국내의 대기업이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안드로이드폰의 접근성 이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정보통신 접근성은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의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정보와 서비스는 PC 또는 모바일 폰과 같은 정보통신 기기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공된다. 사용자들이 보고 읽고 듣는 정보와 콘텐츠는 주로 시각과 청각을 이용하는 인터페이스 상에서 교환되는데, 인터페이스 상에 표시되는 정보의 형태에 따라 그 기능이 결정되기 마련이다. DOS와 같이 텍스트 기반의 인터페이스에서는 모든 정보가 텍스트의 형태로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이런 인터페이스는 시각장애인에게 텍스트를 순서대로 읽어주면 되기 때문에 화면 낭독용 보조 프로그램을 제작하기가 쉬웠다.

그러나 GUI 기반의 인터페이스에서는 문자와 그래픽이 섞여서 병렬로 제공된다. 대부분의 그래픽은 속성을 갖는 객체로 처리되고, 이러한 객체들은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고 화면 곳곳에 산재되어 있으므로, 화면낭독용 보조 프로그램이 읽어주기도 어렵고, 시각 장애인 사용자가 화면상에서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든 인터페이스의 접근성부터 확보해야 한다. 모바일 접근성은 모바일 기기의 인터페이스 접근성 이슈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웹 또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와 콘텐츠의 접근성 이슈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일단 모바일 기기의 접근성이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는 모바일 웹과 애플리케이션에서 기기의 접근성 기능에 맞추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는가 하는 점이다. 즉, 웹 콘텐츠 접근성과 마찬가지로 애플리케이션의 콘텐츠와 기능 자체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면 모바일 운영체제의 접근성 기능을 통해서 콘텐츠를

음성으로 바꾸어주거나 시각적으로 확대할 수 있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손쉬운 동작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사용자가 직접 이러한 설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설계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출시 후의 사용성 평가까지 모든 단계에서 실제 장애인 사용자가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사용자 평가는 언제나 제품과 서비스의 설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어떤 설계에서도 사용자의 직접적인 피드백 없이 쓰기에 편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는 없다. 장애인의 사용을 고려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는 당연히 **장애인 사용자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에 포함된 장애인 사용자 평가 권고조항은 그 중요성이 반영된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와 제품들은 유독 주 사용자가 되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용자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장애인 사용자를 구하기 어렵고 평가 방법이 까다롭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용자 중심의 설계가 이루어지고 출시 이후에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하겠다.

사용자 평가는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시각 장애(전맹 및 저시력), 청각 장애, 지체 장애, 학습 장애, 인지 장애, 뇌병변, 광과민성 장애, 고령 등과 같은 다양한 장애 또는 일부 중복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장애인 사용자 평가의 구체적인 결과를 별도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사용자에겐 정확한 정보를 주는 범위에서 제대로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제공자 입장에서 홍보용으로 활용하기에도 적당하다. 문제는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 공공기관이 이 조항을 따라서 실제로 장애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사용자 평가를 실시했는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향후 어떻게 이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모바일 접근성 지침과 관계 표준을 준수하여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좋은 제품이자 서비스이다. 그러나 실제로 제작되어 출시되는 애플리케이션이 과연 이러한 지침을 제대로 반영하여 설계된 것인지는 고령자와 장애인 사용자가 직접 평가하여 판단할 문제이다.

예로 들어, 발제문에서 제기한 여러 방안 중에서 모바일 접근성 인증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관계 인증에는 장단점이 섞여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인증의 절차에 장애인 사용자의 직접적인 평가가 없다면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즉 본말이 전도된, 인증을 위한 인증 같은 제도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에 논의되는 관계 법령의 개정에도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가 논의되었으면 한다.



제 2 주제  
장애인 방송접근권 문제와 해소방안





# 장애인 방송접근권 문제와 해소방안

## - 파워포인트 발표자료 한글요약문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정책실장

### 슬라이드 2 (목차)

- 물리적 환경변화
- 논리적 환경의 접근성 저하
- 매체 접근성 및 조작성 문제와 콘텐츠의 질적문제
- 현행법과 장애인방송 접근성 관련 고시안의 주요내용과 한계점 및 개정방향
- \* 현행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 고시안: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 장애인방송 정보접근권의 적용사례

### 슬라이드 3 (물리적 환경변화)

### 슬라이드 4 (라디오)

- 아날로그: 물리적 조작성 쉬움, 다이얼 형태로 인하여 시각장애인이 쉽게 주파수를 설정하여 청취가능 함
- 디지털: 버튼 형태로 되어 있어 조작성이 떨어지며 미세 조정 등이 어려움

### 슬라이드 5 (1980년대 텔레비전)

- 컬러 텔레비전의 아날로그 조작방식으로 조작성이 쉬움
- \* 로터리방식: 흑백 텔레비전과 동일
- \* 채널별 버튼 매칭 방식: 채널별로 버튼이 매칭되어 버튼의 수를 확인하며 조작가능

### 슬라이드 6 (1990년대 텔레비전)

- 디지털 조작방식 (채널과 볼륨 상하, 전원 버튼 등으로 체계화)
- \* 양각버튼으로 번호를 조작하도록 되어 있음
- \* 버튼 기능 파악 불가능
- \* 정확한 채널정보 파악의 어려움
- \* 현재 위치 확인이 어려움으로 조작성 미흡

### 슬라이드 7 (1990년대 리모콘 등장)

- 리모콘이 텔레비전 조작의 주류가 되면서 다양한 리모콘으로 인하여 버튼형태와 위치가 다양한 리모콘이 등장함.
-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리모콘의 버튼을 파악하고 텔레비전을 조작하기에 더욱 어려움을 따름

### 슬라이드 8 (2000년대 이후)

- 터치 조작방식: 양각화 된 버튼 대신 시각으로 확인가능 한 터치 조작방식이 등장하면서 시각 장애인 조작성이 더욱 떨어짐.
- 위성방송, IPTV 디지털 방송 등으로 방송환경이 변화하면서 매체 조작을 위한 셋톱박스의 본격적인 출현으로 인하여 텔레비전 조작 뿐만 아니라 셋톱박스에 대한 조작성이 문제로 대두됨.

### 슬라이드 9 (논리적환경의 접근성저하 및 콘텐츠의 질적문제)

### 슬라이드 10 (콘텐츠 다양화로 인한 접근성 저하)

- 1970년대 이전: 3~4개 공중파 채널 송출 및 수신으로 방송 접근 이용에 차별이 거의 없음.
- 1980년대: 초기 지역 케이블(so)가 등장하였으나 공중파 재전송 및 일부 재방송 등으로 인하여 접근에 어려움이 없음.

- 1990년대: 거대 케이블 방송사(SO) 등장과 다양한 PP 사들이 등장하면서 공중파 이외의 다양한 방송 들이 만들어지고 채널이 복잡해 짐.
- 2000년대 방송 환경의 변화, 매체의 다양화
- \* 위성방송, 지상파 및 위성 DMB, IPTV 등장으로 인하여 더욱더 복잡해진 방송 접근환경 도래
- \* VOD 서비스의 등장하여 일반적인 시청환경은 개선되었으나 시각장애인 접근 환경은 더욱 어려워짐

#### 슬라이드 11 (콘텐츠의 질적 문제)

- 2000년대 이전: 방송되는 모든 콘텐츠가 화면해설을 제공하지 않음
- 2000년대 이후: 공중파를 중심으로 주요 드라마 및 엔터테인먼트에 대하여 방송사의 화면해설 방송 제작 비율 미흡(5% 내외)

#### 슬라이드 12 (매체접근성 및 조작성의 문제)

##### 슬라이드 13

- 조작의 어려움: 아날로그, 버튼, 리모콘, 터치 순으로 변화하면서 조작성 저해
- 피드백 미제공: 시각적 피드백만 제공함으로써 TV접근 환경 저해
- \* 버튼 조작에 실수가 발생하면 전원을 다시 끄고 켜는 기능밖에 조작할 수 없음
- \* 채널, 음량 EPG메뉴, VOD 정보 등에 대한 음성 피드백 미제공

#### 슬라이드 14 (현행법과 고시안의 주요의미, 한계점 및 개정방향)

##### 슬라이드 15 (장애인방송 관련 법 및 고시)

- 2010년 5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 제 21조 3항 개정
- 2011년 5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 5항 및 6항 신설
- 2011년 12월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정
- \* 장애인방송 편성 비율 규정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

##### 슬라이드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제도)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③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시행령>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5.19.>

1.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2.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수화통역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이행에 필요한 기준, 방법 등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3.3.23.>

**슬라이드 17**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 법적 근거: 방송법 제 69조 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 재정사유: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자막,수화, 화면해설)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상사업자의 범위 및 편성비율 등 세부사항을 고시로 제정하여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
- 목적: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슬라이드 18** (고시 주요내용)

- 가. 장애인방송 제공 대상사업자를 방송법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지정사업자와 방통위가 매출액과 시청점유율을 기준으로 매년 고시하는 고시의무사업자로 구분함(제5조).
- 나. 방송사업자별 장애인방송 편성목표치를 규정함(제6조, 제7조).
- 다. 장애인방송물을 송신 또는 재송신할 경우 장애인방송 신호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 방송 유형을 문자 또는 음성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 함(제8조, 제9조).

라.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방송사별 장애인방송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평가하도록 함(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마. 비실시간 방송, 전자프로그램가이드(EPG) 등에 대하여 장애인 시청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제15조).

### 슬라이드 19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시행령 제도의 한계점)

- 현행 법률: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으로 한정하여 됨으로 이에 따른 시행령 및 고시 등에서도 관련 부분만으로 한정
- 방송접근권의 하드웨어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명문화 부족
- 기타 시청편의 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슬라이드 20 (고시내용의 한계점)

- 명칭문제: 고시안의 ‘편성 및 제공 등’ 명칭이 방송접근 문제를 지엽적으로 다룸
- 수립하고 있는 고시내용의 한계성(장애인 방송 제공 지정 사업자 편성비용, 장애인 방송의 송신 및 재송신, 장애인 방송시청보장위원회, 비 실시간 방송, 전자프로그램가이드 등)
- 시청을 위한 기본적인 접근권 및 관련 기술내용 미포함
- 장애인방송 콘텐츠문제는 반영하고 있지만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 기수리등의 내용은 미반영

### 슬라이드 21 (현행법 및 고시안의 개정 방향)

- 현행법 내용 중
  - \*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서비스 뿐만 아니라 방송사가 제공하는 방송서비스 시청 보장을 위한 조항 신설
  - \* 시행령에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조항신설
- 고시안 내용 중
  - \* 콘텐츠제작, 제공, 송출 외 유료 방송사업자 등 방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 조항 신설 ex) 방송수신기기에 대하여 조작의 편의성 채널정보의 복합안내(음성 및 큰 글자), VOD(주문형 비디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기타 수신기기 조작에 관한 사항
  - 방송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관련 기술 개발에 관한 지원
  - 지상파, 위성, 케이블, IPTV 등 각 플랫폼에 따른 접근성 관련 지원 및 수행 실태조사 등
  - 전자프로그램 가이드 수신기기 접근성 보장 등에 대한 규정

## 슬라이드 22 (장애인방송 정보접근권의 적용사례)

## 슬라이드 23 (CJ헬로비전의 이어드림 서비스 사례)

- 이어드림: 디지털 케이블 TV 방송서비스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
- 궁극적 목적: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의 제공

## 슬라이드 24

- 시각장애인용 TV서비스: 방송화면 음성안내, 영화/방송 다시보기, 화면해설 예약녹화
- 각각의 불편사항
  - \* 방송화면 음성안내: 현재 화면의 방송정보 알 수 없음
  - \* 영화/방송 다시보기: 지난프로그램 및 좋아하는 방송을 마음대로 다시 볼 수 없음
  - \* 화면해설 예약녹화: 화면해설방송을 놓치면 볼 수 없고 방송 시간대에 시청하기가 어려움

## 슬라이드 25

- 장애인방송 접근성 해소
  - \* 방송정보: 화면 음성안내 설정, 음성속도 조절 가능
  - \* VOD: 음성으로 VOD찾기, 영화방송 마음대로 시청가능
  - \* 화면해설: 화면해설방송 예약녹화가능, 원하는 시간에 시청가능

## 슬라이드 26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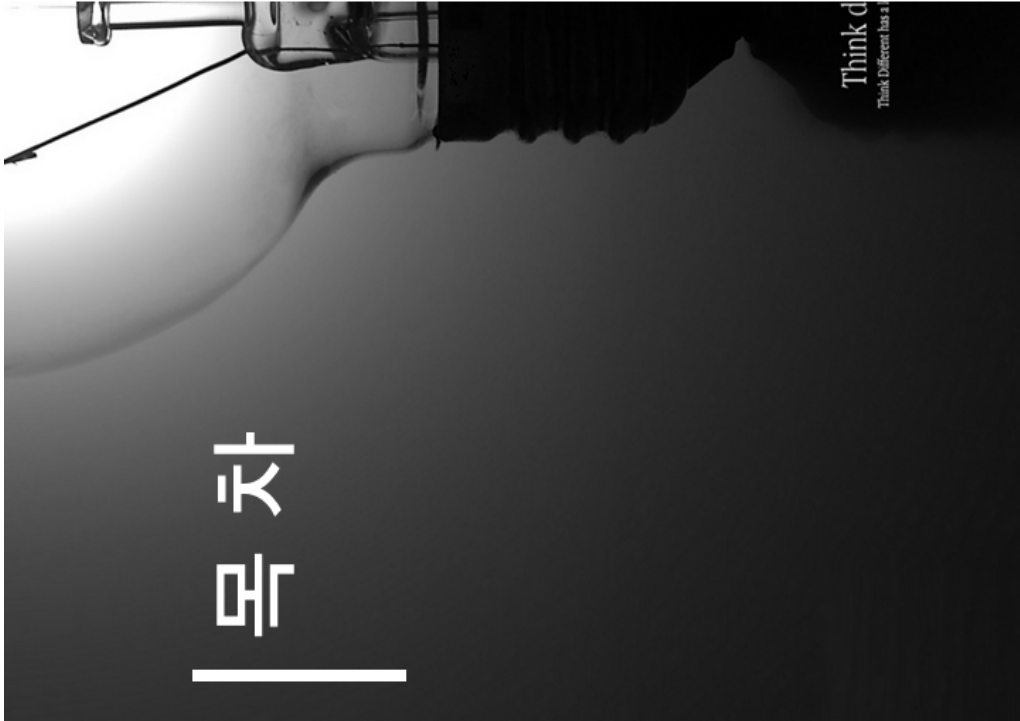


#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문제와 해소방안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발표자 강 완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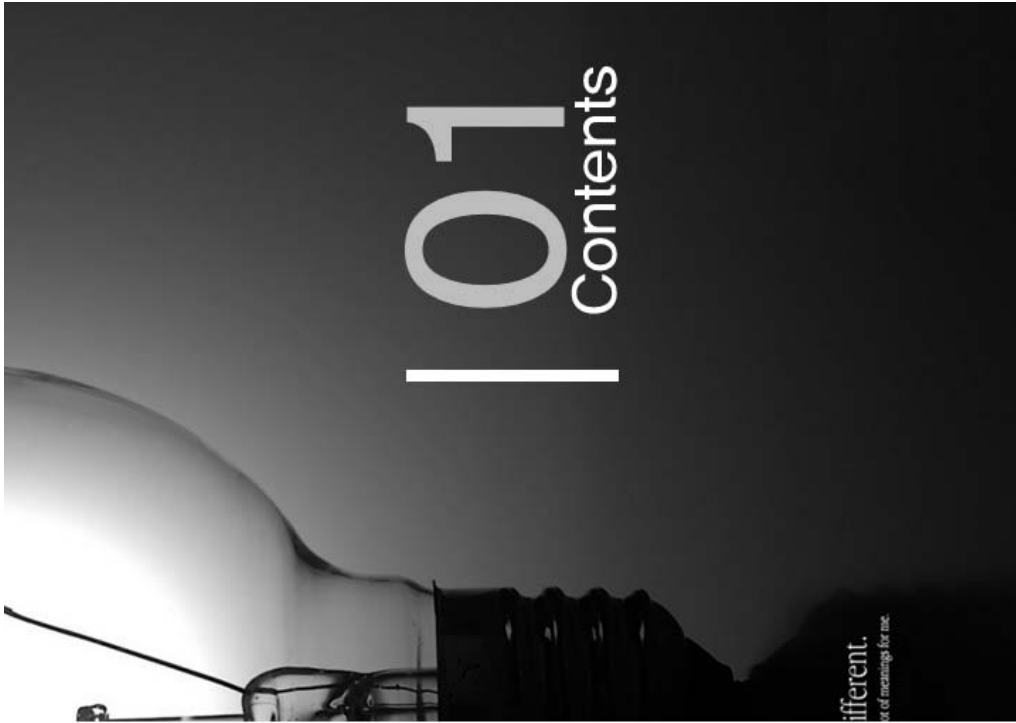
2015. 9.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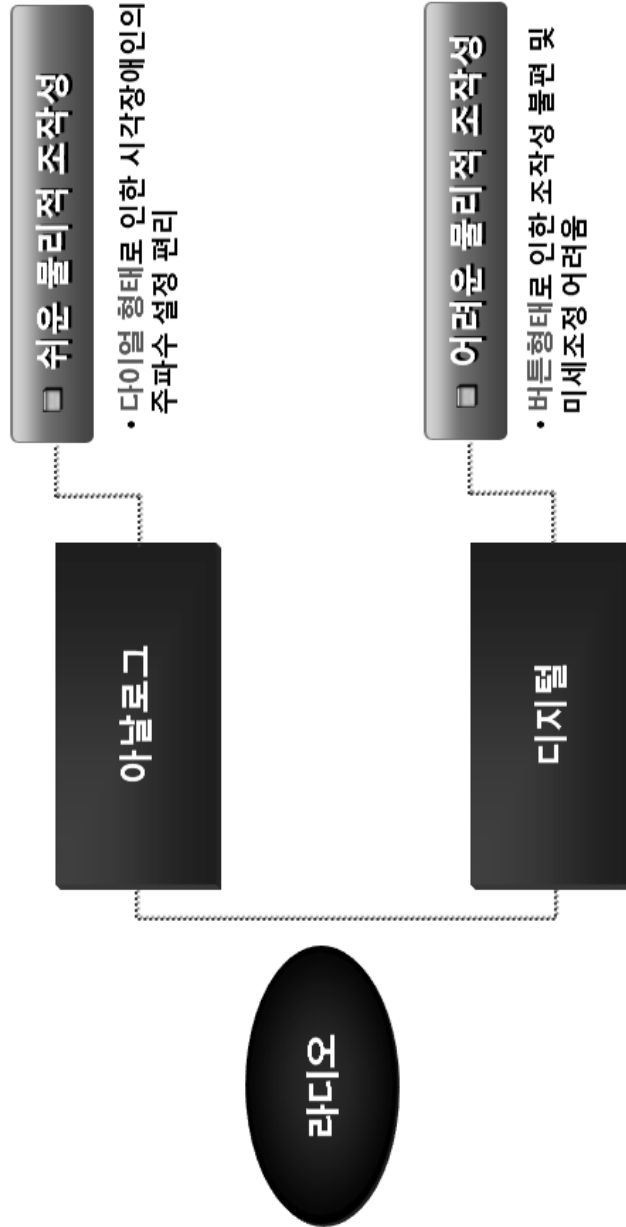


- ◆ 물리적 환경변화
- ◆ 논리적 환경의 접근성 저하
  - 매체 접근성 및 조작성 문제
  - 콘텐츠의 질적 문제
- ◆ 현행법과 장애인방송고시안
  - 한계점 및 개정방향
- ◆ 장애인방송 정보접근권의 적용사례





# 물리적 환경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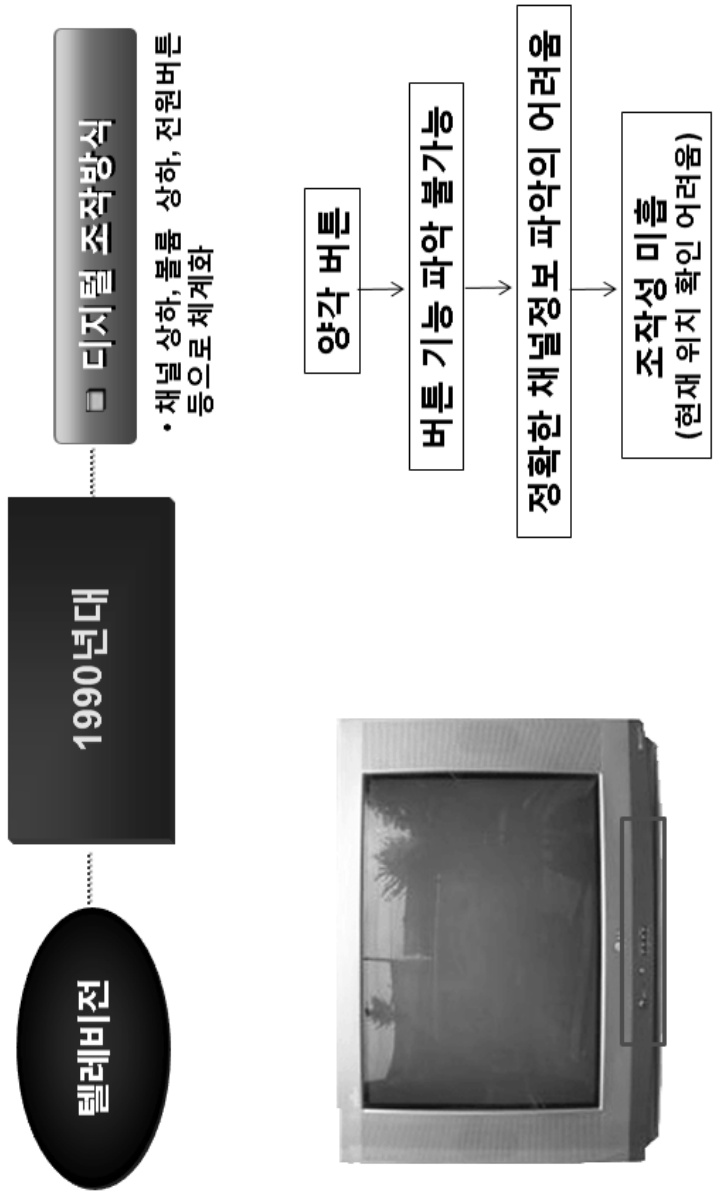


• 채널 별 버튼 매칭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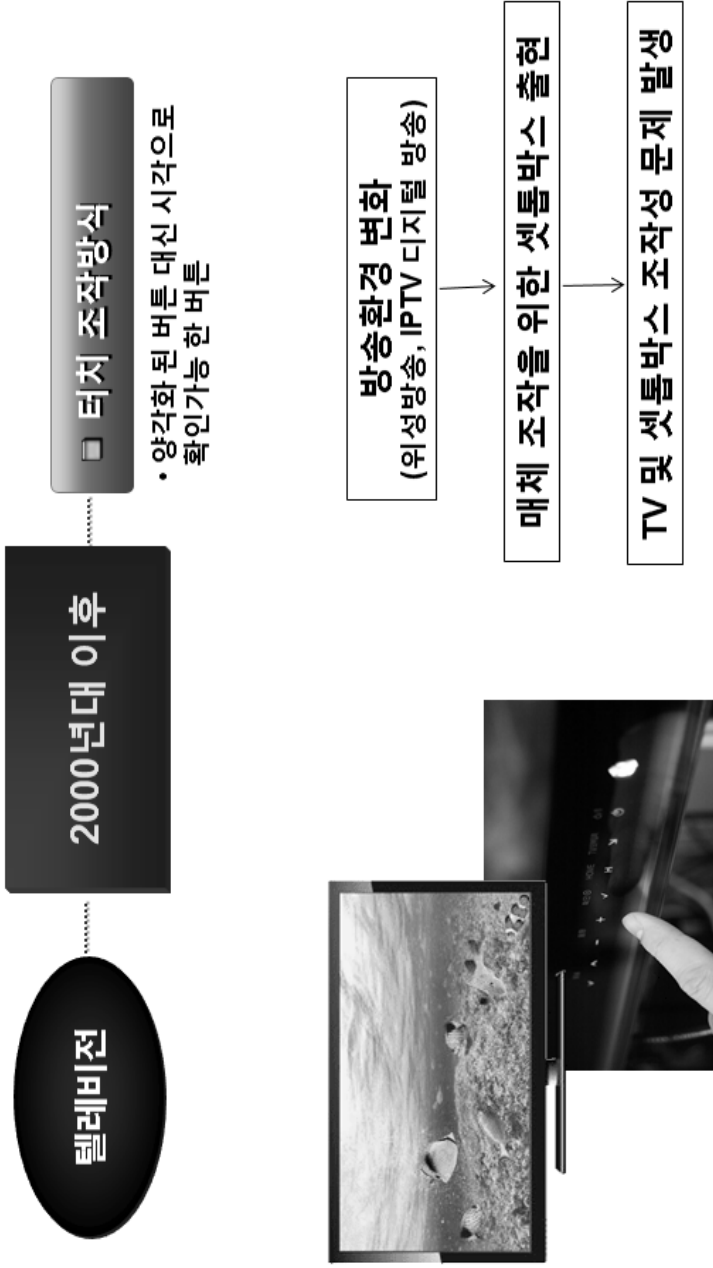


• 로터리 방식











# 논리적 환경의 접근성 저하 및 질적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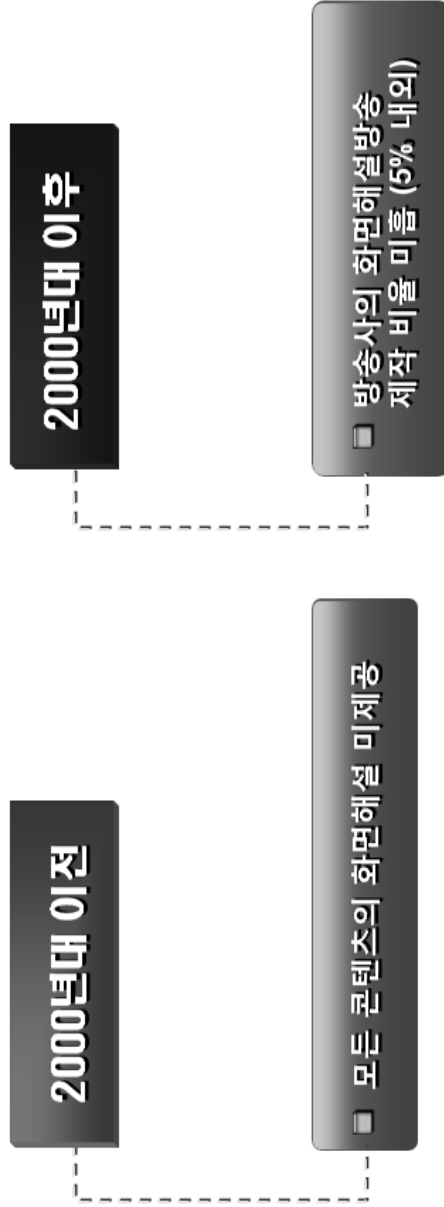
- 콘텐츠 다양화로 인한 접근성 저하 -
  - 콘텐츠의 질적문제-

## | 2 | 콘텐츠 다양화로 인한 접근성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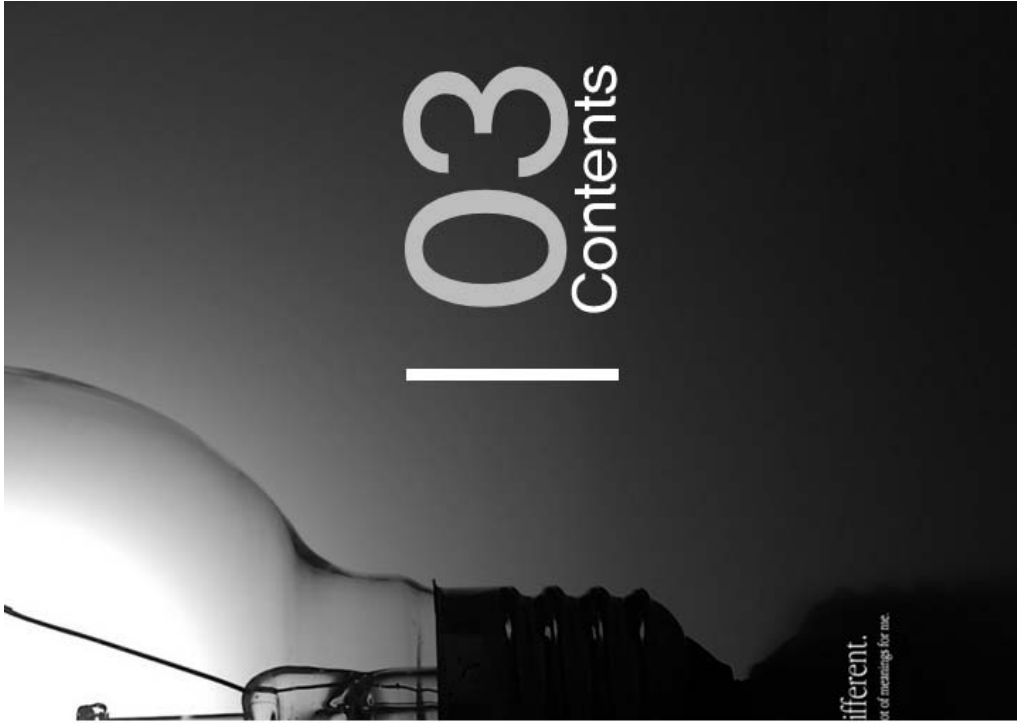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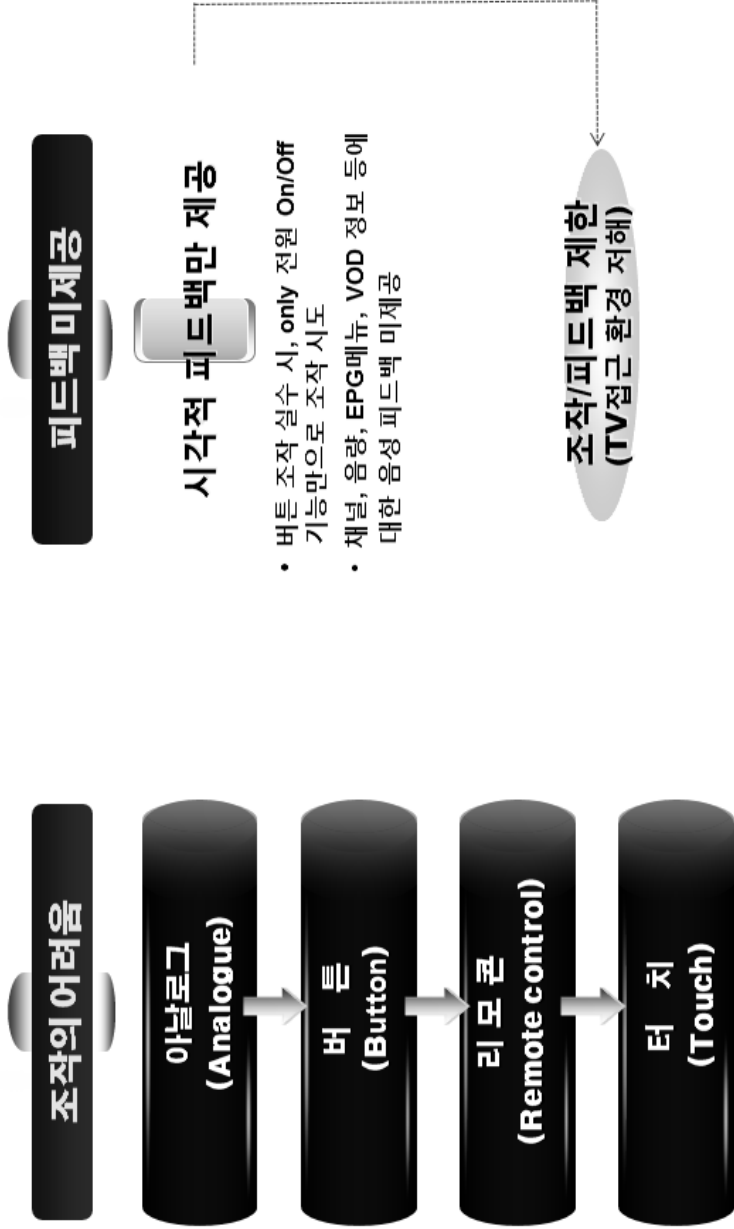
## | 2 | 콘텐츠의 질적 문제



# 매체 접근성 및 조작성의 문제



# | 3 |





- 현행법과 고시안의  
주요의미
- 한계점 및 개정방향

## | 4 | 장애인방송 관련 법 및 고시

2010년 05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제21조 제3항 개정

2011년 05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6항 신설

2011년 12월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정

- 장애인방송 편성 비율 규정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  
(공중파지역케이블(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위성방송, IPTV 등)

## | 4 |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현행 법 및 제도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③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닝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 제14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5.19.>
1.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2.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수화통역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이행에 필요한 기준, 방법 등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3.3.23.>

## | 4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 법적 근거

「방송법」 제 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 재정 사유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자막·수화·화면해설) 제작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상사업자의 범위 및 편성비율 등 세부사항을 고시로 제정하여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

### 고시 목적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 4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 < 주요내용 >

- 가.** 장애인방송 제공 대상사업자를 방송법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지정사업자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출액과 시청점유율을 기준으로 매년 고시하는 고시의 무사업자로 구분함(제5조)
- 나.** 방송사업자별 장애인방송 편성목표치를 규정함(제6조, 제7조)
- 다.** 장애인방송물을 송신 또는 재송신할 경우 장애인방송 신호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방송 유형을 문자 또는 음성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 함(제8조, 제9조)
- 라.**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방송사별 장애인 방송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평가하도록 함(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 마.** 비실시간 방송, 전자프로그램가이드(EPG) 등에 대하여 장애인 시청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제15조)



# | 4 | 현행 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도의 한계



# | 4 | 고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안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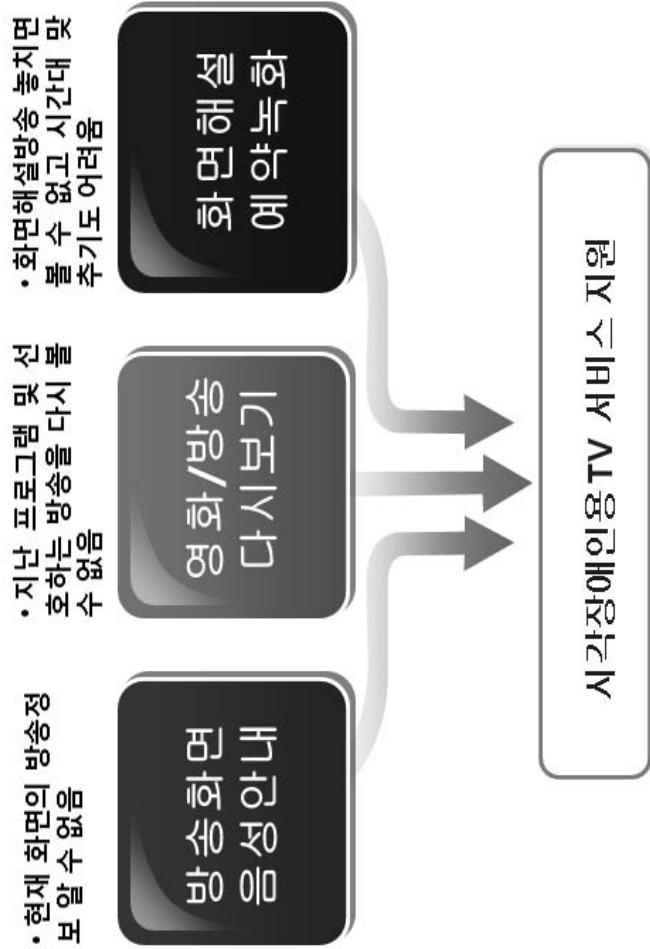
# | 4 | 현행법 및 고시안의 개정 방향

현행법	고시안	Comm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사가 제공하는 방송서비스 시청 보장을 위한 조항 신설</li> <li>• (시행령)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조항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텐츠제작, 제공, 송출 외 유료 방송사업자 등 방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 조항 신설</li> <li>Ex) 방송 수신기기에 대하여 조작성의 편의성, 채널정보의 복합안내(음성 및 큰 글자), VOD(주문형 비디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기타 수신기기 조작성에 관한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관련 기술 개발에 관한 지원</li> <li>• 지상파, 위성, 케이블, IPTV 등 각 플랫폼에 따른 접근성 관련 지원 및 수행 실태 조사 등</li> <li>• 전자프로그램 가이드 등 신기기 접근성 보장 등에 대한 규정</li> </ul>

# 장애이바중 정보접근권의 적용사례









THANK YOU !



# 장애인방송 정보접근권 개선사례

- CJ헬로비전 '이어드림' -

CJ헬로비전  
이재찬 부장

## 1. 개발 동기 : 신입사원의 사업 아이디어에서 출발

CJ그룹 신입사원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출품을 준비하면서 스마트 TV가 가장 필요한 대상을 고민을 하다, 역설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TV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는 TV서비스가 스마트TV를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서비스가 기획되었음.

이러한 아이디어로 2014년 3월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1등상 수상.

## 2. 개발 과정 : 장애인방송 서비스는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라는 교훈 습득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방송서비스는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성엔진 프로그램을 방송 플랫폼에 적용하면 구현할 수 있는 기능임.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방송서비스는 개발 과정을 통해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라는 교훈을 얻었음.

이전까지 대부분의 방송사업자들의 생각은 장애인 서비스는 대상자 수가 적고,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라 이용료 할인을 제공하는 수준에서 대응하였고, ICT 기술을 활용하여 접근권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은 부족하였음

이어드림의 개발과정에서 들은 조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장애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비장애인들도 편하게 쓸 수 있는 서비스이니,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만든다 생각하지 말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었음.

타 사업자들도 약간의 관심과 약간의 개발 투자만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이로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음을 알려주기를 바람.

### **3. 발전 제언 :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미디어 접근권 제고와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가 동시 추구되어야**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개선을 위해, 정부기관 지원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민간기업이 개발의 노력과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면 접근권 개선 사업들은 지속되기 힘들 것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관련 사업을 바라보는 기업의 시각에 변화가 필요함. 장애인은 후원과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가능한 고객으로 인식하여,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확보하여, 더 나은 서비스 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의 비즈니스 가치를 추구해야 함.

장애인 서비스의 비즈니스 가치는 CJ헬로비전의 경험으로 볼 때, 장애인 고객으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지 않더라도, 지역사회 후원활동과 연계하여 얼마든지 사업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됨.

CJ헬로비전의 이어드림 서비스를 장애인방송 접근권 성공사례로 만들어 타 사업자에게도 전파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 청각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권을 위하여

한국농아인협회 ICT미디어분과위원회  
임승택 분과위원장

### 가. 토론회에 대한 견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나서서 장애인의 정보통신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판단함.

더 나아가 이 토론회는 지난번 인권위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평가 토론 이후 이루어진 것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주제라는데 의의가 있음.

인권위의 이러한 활동 방향의 기초는 미국의 21세기통신법도 큰 몫을 하고 있어 앞으로 장애인의 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기대가 큼.

하지만, 이번 토론회가 “시·청각 장애인의 모바일 접근”이라는 주제에 맞지 않게 시각장애인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아쉬움이 있음.

### 나. 청각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권을 위하여

#### (1) 모바일 접근

청각장애인의 경우 모바일을 이용할 때 오디오를 듣지 못하여 정보를 얻기 어려움. 이에 대하여 모바일 접근성 지침에는 수화나 자막 등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대부분 콘텐츠에 수화나 자막을 제공하지 않고 있고, 제공을 하더라도 제공되는 것들이 모바일에서는 작아서 볼 수 없음.

따라서, 모바일에서 자막이나 수화통역을 일정부분 크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함.

## (2) 방송 접근

인터넷을 사용하는 젊은 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IP TV시청이 늘고 있음. 하지만 시청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있음.

자막크기 조절이 안 되거나 수화통역 화면이 작아서 시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음. 또한 수화통역 비율이 5% 이내로 제한되어 수화통역 방송이 작고, 재방송 프로그램에 자막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이에 해당됨.

최근 수화통역방송을 숨길 수 있고, 수화통역 화면의 창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수화방송’ 기술도 개발되는 등 기술 환경이 바뀌고 있어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재정적인 방안이 필요함.

즉, 현재 5%로 한정된 수화통역방송의 비율을 10% 이상 확대하고, 자막이나 수화통역방송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셋톱박스의 개발도 필요함. 더 나아가 자막신호를 저장했다가 재방송에도 송출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저작권 협의도 진행이 되어야 함.

## (3) 법률 및 정책의 개선

장애인 정보접근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하여야 함.

이를 통하여 정보통신 콘텐츠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에게 일부 의무를 부과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며, 접근 대상을 전자기기까지 넓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해당 정보통신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 환경 개선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원 조치가 있어야 함.

농민 및 장애인들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 계획, 정보통신 접근 및 사용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 플랫폼 접근권 확보가 필요

(주)엑스비진테크놀로지  
김정호 이사

방송 소비 환경이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맞춰 디지털화되고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서는 방송 콘텐츠에 한정해 접근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설령 접근성이 보장된 방송 콘텐츠가 충분히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TV나 셋톱박스과 같은 방송 플랫폼의 접근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방송 시청에 심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미국 최대 케이블TV 사업자인 컴캐스트(Comcast)사의 최근 노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컴캐스트사는 자사의 미디어 플랫폼인 X1에 음성안내, 음성 인식 그리고 폐쇄자막 기능을 추가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과 그리고 지체장애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방송 플랫폼을 최근 선보였다. 물론 이러한 컴캐스트의 노력은 2010년 제정된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주요 가전제조사들 역시 21세기법 제정에 따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자사의 디지털TV 제품에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을 포함시켜가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은 국내 시장에서도 구입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방송 시장이 3개 IPTV 사업자에 의해 과점된 상태이고, 해당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셋톱박스를 장착해야 하기 때문에 TV 자체가 갖고 있는 접근성 지원 기능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 예로서 LG유플러스

에서는 구글TV를 자사의 셋톱박스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방송 이용을 위해서 별도의 미들웨어를 적용해 구글TV 자체의 접근성 기능은 동작하지 않는다.

따라서 방송 서비스가 지니는 공공재 성격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공공 서비스에서의 장애인 차별 금지와 같은 수준으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각 사업자에게 부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송의 범주가 전통적 의미의 방송 콘텐츠뿐만 아니라 영화를 포함한 주문형 비디오나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콘텐츠까지 확대되고 있어 실질적인 방송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접근권 보장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제도적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부록 : 참고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29.] [법률 제12365호, 2014.1.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 가. "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수화,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 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3.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4.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5.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16.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7.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8.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

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19.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실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실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차별판단)** ①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차별금지

### 제1절 고용

**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할,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 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절 교육

**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에 대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들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

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눈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건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

②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건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건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3.3.23.>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1., 2014.1.28.>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11., 2013.8.13.>

[제목개정 2010.5.11.]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3.29.>

③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 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2.10.22.>

⑦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급·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참정권)**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5절 모·부성권, 성 등**

**제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교육·지원·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①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도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④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⑥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 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신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준용규정)** ①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방법·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①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손해배상)**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멸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 제6장 벌칙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1.>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과태료)**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5.11.>

③ 삭제 <2010.5.11.>

④ 삭제 <2010.5.11.>

⑤ 삭제 <2010.5.11.>

부칙 <제12365호, 2014.1.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3.23.,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후단에서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21., 2013.3.23.>

1. 장애인이 승·하차하거나 스스로 운전할 때 도움을 주는 보조기구를 장착한 자동차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정보통신제품

**제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4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3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5.19.>

1.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4.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2.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3. 재할,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출·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4. 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5.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6.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제6조(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의학적 검사의 비용부담 방식 등)** ① 사용자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때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로자가 의학적 검사를 받은 후 그 검사에 드는 비용의 명세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의학적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의학적 검사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거나 작업일정 변경 등을 통하여 의학적 검사를 받는 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2.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3.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제9조(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 ① 교육책임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독립된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장애아동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활동 내용 및 장애인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과 단계적 적용범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로 한다.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제13조(이동·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①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교통사업자·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2.11.27.>

②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2.11.27.>

③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운전면허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에 출장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 등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행사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5.19.>

1.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2.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수화통역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이행에 필요한 기준, 방법 등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3.3.23.>

⑦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1.5.19.>

⑧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는 중계자가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문자나 수화영상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음성을 문자나 수화영상 등으로 변환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장애인 아닌 사람 간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서비스로 한다. <신설 2011.5.19.>

**제15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제16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6.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양성
7.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
8.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② 제1항제1호의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시기는 별표 5와 같다.

**제17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구급시설에서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에 따른다.

**제18조(직장보육서비스 적용대상 사업장 및 단계적 범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하되, 이 규정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1.12.8.>

**제19조(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1. 장애여성 근로자 자녀의 직장어린이집 우선 입소 지원
2. 직장어린이집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데에 위험이 없도록 장애물 제거
3. 소속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안내책자 비치
4.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 상태에 따라 자녀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5. 상담을 통한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제20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
2.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

**제21조(시정명령 기간)** 법무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권고 불이행을 확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시정명령 서면)**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시정명령의 이유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한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제23조(장애인차별시정심의회위원회)** ①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장애인차별시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의 법무실장, 인권국장, 인권 및 장애인차별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24조(위촉위원의 임기)**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법무부장관이 요청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2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존중)**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 여부 결정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0조** 삭제 <2011.5.19.>

**부칙** <제24454호, 2013.3.2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별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으로 한다.

<29>부터 <39>까지 생략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정보화기획과) 02-2110-2919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 윤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2.>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국가정보화"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화를 추진하거나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화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식정보사회"란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가 행정, 경제, 문화,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5.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器機)·기술·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6.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8. "정보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9.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9의2. "정보통신윤리"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과정에서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10.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1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2. "정보통신기반"이란 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하여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13. "초고속정보통신망"이란 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고속·대용량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4.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이란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고속·대용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5.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16.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관련한 기술 및 서비스를 시험·검증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7.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1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19.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0. "인터넷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화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3.23.>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5.22.>

1. 국가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공공 분야의 정보화
3. 제16조에 따른 지역정보화
4.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분야별 정보보호, 국가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
6.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7.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8.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9.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개선
10.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활성화
11.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2. 그 밖에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검토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그 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정 결과를 해당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삭제** <2013.3.23.>

**제10조 삭제** <2013.3.23.>

**제11조(정보화책임관)**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0.2.4., 2013.5.22.>

1.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국가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 5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활용
- 7. 정보화 교육
-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필요한 정보의 교류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임명된 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3.5.22.>

- 1. 전자정부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 3.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관한 사항
- 4.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 5. 여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지역정보화사업,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 및 인터넷중독의 예방·해소의 추진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의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정보화책임관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①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 1.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중복되는지 여부
- 2.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계획이 적정하게 반영·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정보화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정보화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보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5.22.>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의 지원
3. 국가기관등이 보유한 주요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표준화의 지원
4. 국가기관등의 정보자원 관리 지원
5. 국가기관등의 정보화사업 추진 및 평가 지원
6.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 촉진과 이에 따른 전문기술의 지원
7. 정보문화의 창달과 인터넷중독의 실태조사, 예방 및 해소 지원
8.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원
9. 건강한 정보문화의 확립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10. 국가정보화,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 분석, 미래예측 및 법·제도의 조사·연구
11. 국가정보화,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및 홍보
12.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13.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화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화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⑤ 정보화진흥원은 지원을 받으려는 국가기관등에 그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정보화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정보화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화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국가정보화의 추진

#### 제1절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등은 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이하 "공공정보화"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도입·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화(이하 "지역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정부는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하여 기업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기반의 구축·이용 등 민간 분야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식·정보의 공유·유통)** 국가기관등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창출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 공유·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정보통신응용서비스 이용 등의 활성화)** 정부는 인터넷, 원격정보통신서비스 및 전자거래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표준화의 추진)** 정부는 국가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① 정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간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국가정보화 관련 영역과의 연계)** ①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정보통신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1. 국가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평가
5.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6.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 및 인터넷중독 예방·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7.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절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

**제25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 개발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기본방향
2.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
3.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및 공동이용
4. 지식정보자원의 유통체계 구축
5.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6. 지식정보자원의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7.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시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6조(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개발·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보존 및 전송
2. 지식정보자원의 공동활용
3.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의 개발·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및 활용)** ① 미래창조과학부장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식정보자원 중에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높아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자원(이하 "중요지식정보자원"이라 한다)에 대한 디지털화 추진,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유통, 표준화 계획 등을 수립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에 드는 비용은 제공을 요청하는 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관리, 유통 및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유통·활용·표준화 및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관리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국가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절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 보장 및 인터넷중독의 예방·해소 <개정 2013.5.22.>

**제29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3.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4.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그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5.22.]

**제30조의2(인터넷중독 관련 계획 수립의 협조)**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 계획 또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2.]

**제30조의3(그린인터넷인증)**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하여 그린인터넷인증을 할 수 있다.

②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으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그린인터넷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그린인터넷인증의 기준, 절차, 방법, 유효기간 및 그 밖에 그린인터넷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제30조의4(그린인터넷인증의 취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인터넷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인터넷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그린인터넷인증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3.5.22.]

**제30조의5(그린인터넷인증의 표시 등)** ①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린인터넷인증마크를 표시하거나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②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린인터넷인증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5.22.]

**제30조의6(인터넷중독대응센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2.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제30조의7(인터넷중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22.]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2조의2(웹접근성 품질인증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웹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유효기간, 수수료 부과 및 그 밖에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제32조의3(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제32조의4(웹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등)** ①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웹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② 제32조의2에 따라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5.22.]

**제32조의5(웹접근성 품질인증의 취소)** 인증기관의 장은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또는 제18조의2에 따라 도메인이름등이 말소 또는 이전된 경우

[본조신설 2013.5.22.]

**제33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사업자
2. 장애인·고령자·농어민·저소득자를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3. 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4.>
-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1. 정보문화의 창달
  2. 정보격차의 해소
  3.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4.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제2절 정보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

**제3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암호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유통 중인 정보보호시스템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기 위한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개인정보 보호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0조(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국민정서를 함양하며,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1.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2. 정보통신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3. 정보통신윤리 관련 연구 및 개발
4. 정보통신윤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5. 건전한 정보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등

[제목개정 2013.5.22.]

**제41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
2.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 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이용자의 명예·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4.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을 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정부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저작권, 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권이 합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제목개정 2011.5.19.]

## 제5장 연차보고 등

**제43조(연차보고 등)** ① 정부는 매년 국가정보화의 동향과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1.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실태
2. 정보문화 시책의 추진 실태
3. 정보격차의 실태 및 해소 현황
4. 인터넷중독 실태 및 조치 현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지표조사)** 미래창조과학부장은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에 대한 지표를 조사하고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5조(자료 제출의 요청)** 미래창조과학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지원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의 및 조정의 지원
3. 제24조에 따른 국제협력
4. 제27조에 따른 중요지식정보자원의 관리
5. 제43조에 따른 연차보고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4.11.19.>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1. 그린인터넷인증에 관한 업무
2.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제47조(과태료)** ① 제14조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30조의5제2항 또는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5.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 제6장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제4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홍보, 국제협력, 기술개발 등 그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정부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촉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전담기관에 출연하거나 용자 등을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초고속국가망의 관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은 국가재정으로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기관(이하 "비영리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이하 "초고속국가망"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거나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은 비영리기관등이 초고속국가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관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으로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을 구축·관리·운영하거나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1조(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등)** ① 정부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관로·공동구·전주 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시설의 효율적 확충·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방송법」 제2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운영·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전기통신 선로설비(「방송법」 제80조에 따른 전송·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위한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③ 기간통신사업자등은 제2항의 기관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은 제3항에 따른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건설 또는 대여의 요청 및 합의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제14조제1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 소속 기관"을 "행정자치부 소속 기관"으로 한다.

⑮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정보화기획과) 02-2110-2917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고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조** 삭제 <2013.3.23.>

**제4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8., 2013.3.23.>

1. 중앙행정기관 : 매년 4월 30일
2. 지방자치단체 : 매년 7월 31일

② 법 제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어 있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매년 9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8., 2013.3.23.>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8., 2013.3.23.>

**제5조(조정의 절차와 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조정의 상대방
2. 조정이 필요한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3. 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을 요청한 기관의 장 및 조정의 상대방에게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의견,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장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4.29.]

**제6조** 삭제 <2013.3.23.>

**제7조** 삭제 <2013.3.23.>

**제8조** 삭제 <2013.3.23.>

**제9조** 삭제 <2013.3.23.>

**제9조의2** 삭제 <2013.3.23.>

**제9조의3** 삭제 <2013.3.23.>

**제10조** 삭제 <2014.4.29.>

**제11조** 삭제 <2014.4.29.>

**제12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행정자치부의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각 1명을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협의회의 의장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3.3.23.>

③ 협의회의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정보화계획 반영 대상사업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이란 별표 1에 따른 대규모 투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11.20.>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별표 1에 따른 대규모 투자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에 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하여금 기술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운영)** 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 정보화사업 추진 및 평가의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정보자원 현황 등의 작성·관리)**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이하 "정보자원현황등"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자원현황등을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자원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보자원현황등 작성·관리의 기본방향
2. 정보자원의 현황 및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정보기술의 도입 및 투자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자원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자원현황등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자원관리방안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등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6조(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정부는 법 제17조에 따라 민간 분야의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의 정보화 기반 조성
2.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의 정보화 교육, 컨설팅 및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3. 그 밖에 민간 분야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7조(지식·정보의 공유·유통)** ① 국가기관등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식 및 정보의 공유·유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식 및 정보의 공유·유통을 위한 표준의 설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8조(국가기관등 간의 정보 공동활용)**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식 및 정보의 공유·유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 행정업무 처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국가기본데이터베이스로 지정하고 다른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동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기본데이터베이스의 공동활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의 요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민간사업자 및 민간사업자단체와 협의체(이하 "민간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민간협의체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국가기관등의 공무원이나 임직원,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민간사업자 및 민간사업자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민간협의체의 의장은 민간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민간협의체를 통하여 제시되는 의견이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추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민간협의체 회의의 소집 등 민간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민간협의체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민간협의체의 의장이 정한다.

**제20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국가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1조(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을 5년을 단위로 수립하고,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지식정보자원 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지식정보자원 관리시행계획을 확정·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 및 연차별 지식정보자원 관리시행계획 중 예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 및 연차별 지식정보자원 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 및 연차별 지식정보자원 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가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소관 지식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2조(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대상·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미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성과 및 기관 간의 성과 비교
2. 지식정보자원의 현황 및 활용도
3. 문제점 및 개선 방안
4.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성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성과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결과를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3조(지식정보자원의 활용 촉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전자적인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전자적인 형태로 수집·연계 및 통합 관리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조(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① 법 제28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안을 제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표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에 관한 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절차)**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직접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식정보자원(이하 "중요지식정보자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정의 목적 및 사유
2. 지정하려는 지식정보자원의 종류 및 내용
3.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현황 및 지정하려는 지식정보자원의 관리계획
4. 그 밖에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전문가로 평가기구를 구성하여 해당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6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특별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지식정보자원에 대하여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지털화 및 상호연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 및 상호연계를 추진할 때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표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요지식정보자원의 관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요지식정보자원의 공동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공동으로 중요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화하여 유통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7조(지식정보자원의 수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정·개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디지털화된 형태로 지식정보자원을 수집·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전문기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
2. 지식정보자원 관리정책의 개발에 대한 지원
3. 지식정보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관리·연계·유통 및 통합 업무에 대한 지원
4. 디지털화된 지식정보자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근·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식별자 부여 등 분류체계 구성 업무의 지원
5. 지식정보자원 관리 현황 및 실태조사 지원

6.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지원

7.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지식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기관에 업무를 요청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민간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
2. 사업의 필요성 및 파급효과
3. 지원받으려는 내용
4.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④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민간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내용 및 규모
2.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 능력 및 최근의 활동실적
3.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을 위한 해당 시책사업 및 활동의 사회적 수요와 파급효과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관한 의견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 및 지원의 신청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1.20.>

1. 종합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인터넷중독의 실태와 정책성과 분석
3.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전망과 추진전략
4.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와 개발
5.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상담 및 홍보
6.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신기술을 활용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인터넷중독 대응방안
8.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관련 국제협력
9. 그 밖에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종합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제목개정 2013.11.20.]

**제30조의2(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 수립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추진계획의 수립지침을 전년도 12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한 추진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20.]

**제30조의3(그린인터넷인증의 기준)**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그린인터넷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2.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매체 및 콘텐츠 관리의 적절성
3. 인터넷중독 진단 방법 및 상담센터 등에 대한 안내의 적절성
4. 그 밖에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실시 여부

[본조신설 2013.11.20.]

**제30조의4(그린인터넷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그린인터넷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1.20.]

**제30조의5(그린인터넷인증의 표시 및 홍보)** ①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그린인터넷인증마크의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②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20.]

**제30조의6(인터넷중독대응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 확보 및 교육·관리가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20.]

**제30조의7(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의 실시)** ① 법 제30조의8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8제2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은 강의, 시청각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터넷중독 현황 및 사례
2. 인터넷중독 예방 및 시간관리 방법
3. 유해 인터넷 환경에 대한 변별 방법
4. 그 밖에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20.]

**제31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웹사이트 접근성 실태조사
2. 웹사이트 접근성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
3.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그 밖에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1조의2(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기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인증업무와 관련 있는 인력·조직·설비 등의 관리·운영, 인증심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13.11.20.]

**제31조의3(웹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모든 콘텐츠는 시각·청각 등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것
2. 시각·청각 장애인 등 사용자가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3.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나 제어방식을 구성할 것
4. 콘텐츠는 다양한 방법의 기술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 것

②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1항의 품질인증 기준을 적용하여 서면 및 기술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증 거절 사실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웹접근성 품질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11.20.]

**제31조의4(웹접근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32조의2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1.20.]

**제31조의5(인증기관의 업무처리절차)** ① 인증기관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심사 전문인력 및 업무 처리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2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은 그 사업의 폐업·휴업 등 인증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20.]

**제31조의6(수수료)** 인증기관이 품질인증 신청인에게 받는 수수료의 기준은 인증심사에 투입되는 인증심사원의 수, 인증심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11.20.]

**제31조의7(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11.20.]

**제31조의8(웹접근성 품질인증표시 및 홍보)** ①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는 별 표 5와 같다.

②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20.]

**제32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 개발·생산 사업자: 해당 정보통신제품의 내용 및 신청하는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의 내용
2. 장애인·고령자·농어민·저소득자를 위한 콘텐츠 제공 사업자: 해당 콘텐츠의 내용 및 신청하는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의 내용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이하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이라 한다) 개발·보급 사업자: 해당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의 내용 및 신청하는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의 내용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정보통신제품 또는 콘텐츠의 개발·생산·제공 실적 또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의 개발 실적
2. 개발·생산·제공·보급하려는 정보통신제품, 콘텐츠 또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의 유용성
3. 정보통신제품의 생산계획, 콘텐츠의 제공계획 또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3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등)** ① 법 제3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8.3.>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에 따라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제품의 활용성
2. 지원대상자의 정보통신제품 활용 능력
3. 지원대상자의 경제적 여건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의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6.>

**제34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과 종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2.8.3.>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결혼이민자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5.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
6. 삭제 <2009.11.26.>

7.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은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컴퓨터와 인터넷 등에 관한 기본교육
2.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가공 및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35조(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그 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평가 또는 인증하는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인증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시스템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합치되는지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 또는 관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스템을 조사 또는 시험·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평가를 요청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 또는 관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의 장이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6조(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저장·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장비에 음란물 및 폭력물 등 불건전한 정보에 대한 접속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의 설치·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청소년이 정보통신서비스를 건전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7조(이용자의 위해 방지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통신 관련 기기 및 역무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관련 기기 및 역무 등에 관한 이용자 위해 방지기준, 그 용도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 관련 기기의 제조자·수입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그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8조(실태조사)** ① 법 제4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5.4., 2013.3.23.>

1. 국가기관등의 국가정보화 추진 실태
2. 국가기관등의 민간 분야 정보화 지원 실태
3.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제품의 활용 및 이용규범에 대한 정보문화 실태
4.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접근·보유·이용 등에 관한 정보격차 실태
5. 인터넷 및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의 해당 기기에 대한 중독 실태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실태 및 그 추진 성과
7. 국가기관등의 지식정보자원 보유량 및 디지털화 현황
8. 국가기관등의 지식정보자원 및 중요지식정보자원의 관리 실태
9. 그 밖에 국가정보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국가기관등, 국민,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9조(지표의 개발·보급)**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개정 2013.3.23.>

1. 국가정보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2. 정보문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3. 그 밖에 국가정보화, 지식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지표

**제39조의2(그린인터넷인증 관련 업무의 위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린인터넷인증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한다.

1. 그린인터넷인증 신청서의 접수
2. 그린인터넷인증 심사
3. 그린인터넷인증서의 발급
4. 그린인터넷인증마크 이용에 대한 관리

[본조신설 2013.11.20.]

**제40조(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
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광대역통합연구개발사업
3. 미래인터넷 등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신기술 검증을 위한 선도(先導) 사업
4. 광대역통합정보통신의 응용기술 개발사업
5.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품질관리 및 구내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시범지역사업
6.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촉진을 위한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7.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
8. 대국민 홍보사업
9. 법·제도 연구사업
10. 국제협력사업
11. 경쟁력기반기술개발사업
12.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13. 그 밖에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분야별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전담기관의 사업 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1조(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 ① 전담기관은 법 제4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초고속국가망을 구축·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초고속국가망 구축·운영의 세부 사업계획 수립
2. 정부출연 재원의 집행계획 수립과 집행 및 관리
3. 초고속국가망의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4. 초고속국가망의 수요조사 및 이용계획 수립
5. 초고속국가망의 보안성 확보
6. 그 밖에 초고속국가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초고속국가망의 설계 및 구축
2. 초고속국가망의 운용
3. 초고속국가망의 유지·보수 및 장애 발생에 대한 효율적 복구
4. 초고속국가망 이용기관에 대한 요금의 부과·징수 및 관리
5. 그 밖에 초고속국가망의 효율적인 구축·관리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전담기관의 장은 초고속국가망의 이용기관, 이용조건 등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2조(비영리기관의 범위)**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3. 「의료법」 제3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5.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6.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기관

**제43조(관로 등의 건설·대여 요청 등)**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등(이하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이 관로·공동구·전주 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등과 관로등에 대한 수요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이하 "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기관의 고유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간통신사업자등과 건설 또는 대여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조정 요청 및 심의)** ① 기간통신사업자등과 시설관리기관 간의 협약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그 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기간통신사업자등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아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정을 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평한 협약체결을 위한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조정결정을 한 경우에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5조(관로등의 건설·대여에 관한 조정 요청)**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협약에 관한 조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관로등의 건설 등 협약 조정요청서에 합의 경과 및 추진 상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6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13.11.20.]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시행 2015.5.28]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5-4호, 2015.5.28,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 02-2110-1293

**제1조(목적)**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용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방송"이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통역방송을 말한다.
2. "장애인방송물"이란 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통역방송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3. "폐쇄자막방송"이란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문자로 전달하는 방송을 말한다.
4. "화면해설방송"이란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방송을 말한다.
5. "수화통역방송"이란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방송을 말한다.
6. "방송매출액이란"이란 방송수신료수익, 광고수익, 협찬수익, 프로그램판매수익, 기타 방송사업수익 등의 합계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표한 자료를 말한다.
7. "시청점유율"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방송법 제69조의2에 따라 산정된 자료를 말한다.
8. "장애인방송 제작비"란 장애인방송 제작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한다. 단, 장애인방송 제작에 필요한 장비나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고시의 적용범위는 「방송법」 제2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텔레비전방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텔레비전방송에서 광고방송은 제외한다.

**제4조(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유형)** ①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유형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장애인방송 성실제공의무, 장애인방송 유형표시의무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가 본 고시에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으로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③ 장애인방송 성실제공의무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편성, 송신, 재송신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방송이 중단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④ 장애인방송 유형표시 의무란 장애인방송물을 방송하거나 홈페이지에 방송프로그램 편성표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장애인방송의 유형을 글자 또는 음성으로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제5조(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의 구분)** ①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는 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의무사업자로 구분한다.

② 필수지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 대해 법인을 기준으로 지정·공표한다.

1. 방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단,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

2. 방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위성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 제70조에 따라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는 사업자(단,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

3.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얻은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③ 고시의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중에서 법인을 기준으로 연 1회 지정·공표한다.

1. 방송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 제70조에 따라 지역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방송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얻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기산시점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고시의무사업자를 지정·공표해야 한다.

1. 전년도 송출실적이 있는 사업자

2. 방송매출액에서 장애인방송물 제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

⑤ 제3항제1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할 때,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자로 간주한다.

⑥ 제3항제2호에서 제4호의 사업자를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할 경우 전년도 연평균 시청점유율 0.2% 이상인 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한다. 다만, 여러 개의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는 전년도 연평균 시청점유율 0.2% 이상인 채널에 한해 적용한다.

**제6조(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 ① 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69조의 한국방송공사(지역(총)국 제외) 및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2013년(화면해설방송은 2014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통역방송 5%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야 한다.
2. 방송법 제69조의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와 서울지역을 주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2013년(화면해설방송은 2014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통역방송 5%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야 한다.
3. 방송법 제69조의 한국방송공사 지역(총)국,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서울이외의 지역을 주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2015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통역방송 5%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야 한다.
4. 위성방송사업자는 2016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7%, 수화통역방송 4%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야 한다.
5.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2016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통역방송 5%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야 한다.
6.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의 연도별 목표치는 별표1과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기산시점 2개월 전까지 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를 공표해야 한다.

③ 필수지정사업자가 한 개 이상의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는 당해 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의 평균 목표치로 간주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표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치를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 개시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제시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자가 승인을 얻은 연도별 목표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당해 연도가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사업자는 전년도 목표치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고시의무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 ① 고시의무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2016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7%, 수화통역방송 4%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야 한다.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중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2016년 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5%, 수화통역방송 3%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야 한다.

3.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의 연도별 목표치는 별표1과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차기 년도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기산시점 2개월 전까지 고시의무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를 공표해야 한다.

③ 2013년 이후 신규 지정·공표된 고시의무사업자의 경우, 1차년도(2013년) 목표치부터 장애인방송 편성의 무가 개시된다.

④ 지정 해제된 고시의무사업자가 다시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공표된 경우, 1차년도(2013년) 목표치부터 장애인방송 편성의무가 재개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당시의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를 부여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에서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전소명과 장애인방송 제작여건, 시청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을 경감, 유예할 수 있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전소명과 장애인방송 제작여건, 시청자의 수요, 채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방송 중 특정 방송유형에 대한 편성의무를 경감, 유예할 수 있다.

제7조의2(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 및 유예) ①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경감 또는 유예해 줄 것을 신청 할 수 있다.

1. 경영 상황 등이 별표2와 같은 경우

2.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3. 외부적 원인에 의한 시스템 장애 발생 등 기술적 사유로 방송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방송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신청서 및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경감 또는 유예에 관하여 해당 요건 및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심의하여 그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의견 및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방송 편성의무의 경감 또는 유예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장애인방송 성실제공 의무)** ①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 다른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제공할 경우, 장애인방송 신호 또는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제작·편성한 장애인방송물을 제공받아 시청자에게 송신 또는 재송신할 경우, 제공받은 장애인방송 신호 또는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물을 제작·송신·재송신할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제정한 시청각장애보조방송서비스 기술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④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내용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방송프로그램을 장애인방송물로 제작·편성하여 시청자에게 제공할 경우, 해당 장애인방송물이 방송되는 도중에 중단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9조(장애인방송 유형표시 의무)** ①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시청자에게 장애인방송물을 제공할 때 장애인방송 유형을 문자 또는 음성으로 표시해야 한다.

② 시청자에게 장애인방송물을 제공하는 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홈페이지로 제공되는 방송프로그램 편성표에 장애인방송의 유형을 문자 또는 음성으로 표시해야 한다.

**제10조(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 장애인방송 활성화 등 장애인방송 관련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에 위임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애인방송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장애인단체, 장애인방송 유관기관, 정부기관,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③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

1.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 마련
2.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
3. 시청각장애보조방송서비스 기술표준 준수여부 평가
4.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예외 인정여부 판단
5.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비 산정 및 공표
6.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 등의 조정
7.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평가결과 공표기준 및 방법 마련
8. 장애인방송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9. 장애인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문
10.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임한 업무

④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기관의 장은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의 내규로 정한다.

**제11조(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의무사업자의 장애인 방송물 편성의무, 장애인방송 성실제공의무, 장애인방송 유형표시의무 이행에 따른 실적평가를 연 2회 실시해야 한다.

**제12조(실적자료 제출)** ① 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의무사업자는 장애인방송물 편성의무, 장애인방송 성실제공의무, 장애인방송 유형표시의무 이행에 따른 실적자료를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적자료는 1개월씩 6개월 단위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가 종료된 후에 제출하는 실적자료에는 연간 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장애인방송 편성실적 산정시 예외인정)** ①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장애인방송 편성 실적산정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기술적으로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하기 어려운 경우
2. 저작권 문제로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하기 어려운 경우
3. 기타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다른 사업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다중 언어(2개 국어 이상)로 방송되는 경우 폐쇄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방송
2. 상용화된 방송수신기에서 지원하지 않는 자막(예: 아랍어, 힌두어)의 제공
3. 음성 사이의 간격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화면해설방송을 제공하기 어려운 프로그램
4. 공연실황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방송 제공의 필요성이 적은 음악, 무용 등의 프로그램

**제14조(소명절차)** ① 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의무사업자는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실적자료 제출 시, 실적산정 예외인정 프로그램에 대한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사전소명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실적자료 제출에 앞서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 사전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전소명 요청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사전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장애인방송 시청편의 제고)** ① 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편의 제고를 위하여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이 아닌 서비스에 대해서도 장애인방송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전자프로그램가이드에서 음성안내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방송 시청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장애인방송 제작여건, 시청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방송물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4호, 2015.5.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업자별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

사업자 구분		대상 사업자	개시 시점	기산 시점	최종 편성비율 목표(%)			달성시점
					자막	화면 해설	수화 통역	
지상파	필수 지정	중앙 지상파	2012. 1.	2012. 7.	100	10	5	2013. 12. (화면해설: 2014. 12.)
		지역 지상파	2012. 1.	2012. 7.	100	10	5	2015. 12.
유료방송 (플랫폼)	필수 지정	위성방송 (직사채널대상)	2012. 1.	2013. 1.	70	7	4	2016. 12.
	고시 의무	SO (지역채널대상)	2012. 1.	2013. 1.	70	7	4	2016. 12.
유료방송 (채널사용 사업자)	필수 지정	보도중편 PP	2012. 1.	2013. 1.	100	10	5	2016. 12.
	고시 의무	일반PP IPTV CP	2012. 1.	2013. 1.	70	5	3	2016. 12.

**중앙 지상파방송사(KBS, EBS, MBC, SBS)**

년도/유형	2012	2013	2014
자막	방통위가 승인하는 사업자 제시 목표	100	100
화면해설	방통위가 승인하는 사업자 제시 목표		10
수화통역	방통위가 승인하는 사업자 제시 목표	5	5

**지역 지상파방송사(KBS 지역(총)국, 지역MBC, 지역민방)**

년도/유형	2012	2013	2014	2015
자막	방통위가 승인하는 사업자 제시 목표			100
화면해설	방통위가 승인하는 사업자 제시 목표			10
수화통역	방통위가 승인하는 사업자 제시 목표			5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사용사업자**

년도/유형	2012	2013	2014	2015	2016
자막	30		50	75	100
화면해설	4		6	8	10
수화통역	2		3	4	5

**위성방송(직접사용채널 대상)·SO(지역채널 대상)**

년도/유형	2012	2013	2014	2015	2016
자막	30		45	60	70
화면해설	3		5	6	7
수화통역	1		2	3	4

**채널사용사업자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년도/유형	2012	2013	2014	2015	2016
자막	30		45	60	70
화면해설	2		3	4	5
수화통역	1		2	3	3



[별표 2]

### 장애인방송 편성의무의 경감 및 유예 세부기준

대상사업자	경감 기준	유예 기준
필수지정사업자	재무제표 상에 최근 5년 중 4년이상 적자상태로서 자본잠식률이 70%이상인 사업자 : 전 년도의 자본잠식 비율의 범위내에서 다음 연도에 편성의무비율 경감	재무제표 상에 자본잠식률이 100%이상인 사업자 : 다음 연도에 유예
고시의무사업자	재무제표 상에 최근 5년 중 4년이상 적자상태로서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인 사업자 : 전 년도의 자본잠식 비율의 범위내에서 다음 연도에 편성의무비율 경감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시행 2013.8.19]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07호, 2013.8.19,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정보문화과), 02-2110-2974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제작 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국가정보화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을 따른다.

1. "접근성"이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의 활용 가능성이 제공됨을 말한다.
2. "모바일 기기"란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받을 때에 사용하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란 사용자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바일 기기 상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4. "서비스 제공자"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및 사업자를 말한다.
5. "무리한 부담(Undue Burden)"이란 현재 가능한 기술 수준과 적절한 비용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정도 이상의 노력을 요구함을 말한다.
6. "준수사항"이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말한다.

7. "권고사항"이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준수할 것을 권장하는 사항을 말한다.

8. "운영체제"란 모바일 기기 상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

9. "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신체적·인지적 기능을 증진, 보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 장비의 일부분 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0. "터치(touch) 기반"이란 모바일 기기의 기능 및 화면상의 객체를 키나 버튼 같은 물리적인 형태의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고 화면상에서 직접 만져서 조작 가능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운영체제의 특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운영, 개선 및 유지보수할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이 적용되는 모바일 기기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체제를 갖는 모바일 전화기
2. 운영체제를 갖는 태블릿 기기
3. 운영체제를 갖는 전자책 기기

**제4조(모든 운영체제에서의 접근성 보장)**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신규 구축하는 경우 무리한 부담이 없는 한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기반하고 있는 모든 운영체제에서 동등하게 접근성이 보장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등의 장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하는 경우 무리한 부담이 없는 한 모든 운영체제에서 동등하게 접근성이 보장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무리한 부담이 없는 운영체제의 종류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운영, 개선 및 유지보수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모든 모바일 기기에서의 접근성 보장)**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신규 구축하는 경우 무리한 부담이 없는 한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사용되는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동등하게 접근성이 보장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등의 장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하는 경우 무리한 부담이 없는 한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동등하게 접근성이 보장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무리한 부담이 없는 모바일 기기의 종류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운영, 개선 및 유지보수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정할 수 있다.

## 제2장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사항

**제6조(대체 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1. 대체 텍스트란 그림 및 이미지, 동영상으로 작성된 멀티미디어 형식의 콘텐츠 내용을 텍스트로 그 의미나 기능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한 대체 텍스트는 그 의미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짧고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제7조(초점)** 모든 객체에는 초점(focus)이 적용되고, 초점은 순차적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1. 초점은 화면상의 선택된 객체의 내용을 화면 낭독 프로그램 등의 보조기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말한다.
2. 선택된 객체는 초점이 적용되었다고 하고, 초점은 화면상에서 테두리나 하이라이트로 표시하여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표의 객체에 적용되는 초점은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8조(운영체제 접근성 기능 지원)**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접근성 기능 및 속성이 사용되어야 한다.

1. 운영체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접근성 기능 지원이 활용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키보드 등 외부 디바이스와의 호환성 제공을 위한 API
  - 정보 제공 방법의 다중성 (redundancy)
  - 음성명령 기능의 포함, 고대비, 폰트 등
2.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운영체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접근성 기능을 변경할 경우, 애플리케이션의 종료와 함께 접근성 기능을 변경 전의 상태로 복원시켜야 한다.
3. 입력 서식은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접근성 속성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제9조(누르기 동작 지원)** 터치(touch)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1. 누르기 동작은 화면상의 객체를 손가락 끝으로 접촉하여 만지거나(touch) 가볍게 두드리는(tap) 동작을 말한다.
2. 두 개의 손가락을 동시에 이용해야 하는 다중 누르기(Multi-touch) 동작은 단순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3. 슬라이드(Slide), 끌기와 놓기(Drag and drop) 등의 복잡한 누르기 동작은 단순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제10조(색에 무관한 인식)**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1. 색상으로 정보를 구분할 경우, 색상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동등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색상을 사용한 의미의 전달이 흑백 화면에서도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제11조(명도 대비)**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전경색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최소 대비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1. 명도 대비는 화면의 배경색과 객체를 표시하는 데에 사용되는 전경색 사이의 명도 차이의 비율(contrast)을 말한다.

2. 고대비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애플리케이션의 설정 기능에 명도 대비 조절 기능을 제공한다.

3. 화면상의 모든 정보의 최소 대비는 3:1 이상이어야 한다. 저시력인, 고령자 등에게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명도 대비가 4.5:1 이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사진과 동영상은 예외로 한다.

**제12조(자막, 수화 등의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수화가 제공되어야 한다.

1. 자막, 원고 또는 수화는 화면 상의 콘텐츠와 동기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장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권고사항

**제13조(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Native UI Component)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접근성 있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에 사용되는 표준 도구(대화상자, 버튼과 체크 박스, 타이틀 바 등)들을 말한다.

2.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를 활용하면 보조기기와의 호환성을 제공하기 용이하므로 접근성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제14조(컨트롤간 충분한 간격)** 컨트롤은 충분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컨트롤은 버튼 또는 위젯과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에서 누르기 동작으로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객체를 말한다.

2. 좁은 화면 공간의 경우, 사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다른 컨트롤을 누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 컨트롤 사이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용자가 컨트롤 영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에 관계없이 컨트롤 중심간 간격은 13mm 이상을 권장한다.

**제15조(알림 기능)**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할 때에는 진동, 시각, 소리 등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화면상의 모든 알림 정보는 한 가지 양식으로만 제공되지 않도록 하며, 다양한 감각 양식을 활용한다.

2. 사용자가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범용 폰트 이용)** 폰트의 크기 조절, 확대 기능을 제공하거나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범용 폰트(Global Font)는 운영체제에 내장되어 확대나 축소, 기울임 등의 변형 형태가 제공되는 글자체를 말한다.

2. 모든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폰트 크기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거나, 최소한 확대 기능을 제공한다.

3. 폰트 크기 조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이미지보다 폰트가 지정되어 있는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7조(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배치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사용자가 다시 학습할 필요가 없도록 해당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일관성 있게 설계한다.

2. 애플리케이션의 버전이 바뀌어도 중요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배치는 일관성을 유지한다.

**제18조(깜박거림의 사용 제한)**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객체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사용하지 않는다.

2. 화면상에서 반드시 깜빡임의 효과를 제공해야 하는 콘텐츠는 초당 3 ~ 50 회의 주기는 피해서 설계한다.

**제19조(배경음 사용 금지)**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자동으로 재생되는 동영상, 음악, 음성 안내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단, 3초 미만의 배경음은 예외로 인정한다.

2. 배경음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손쉽게 멈춤, 일시정지, 음량조절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제20조(장애인 등 사용자 평가)**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의 이용 가능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장애인 사용자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애플리케이션의 출시 이전에 장애인, 고령자 등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한다.
2. 사용자 평가는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시각 장애, 청각 장애, 뇌병변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고령 등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장애인 등 사용자 평가의 구체적인 결과를 별도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4장 보칙**

**제21조(준수지침 사항)** 제6조 내지 제20조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구체적인 준수 지침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콘텐츠 접근성 범위)** 애플리케이션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이 지침은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제공하는 콘텐츠에만 적용된다.

**제23조(접근성 진단)**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진단할 수 있다.

#### **부칙 <제2013-107호, 2013.8.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